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 안 자 : 이종길의원 외 11인

나. 회부일자 : 94. 6. 14

다. 상정일자 : 94. 6. 14

라. 의결일자 : 94. 6. 1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종길 의원

나. 제안사유

○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기금설치의 필요성

–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각종 노인복지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기하고자 함.

○ 노인복지기금 조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기타 잡비

○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 복지기금 지급 대상 사업

–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지도

–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에는 기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12조에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예산을 몇억씩 세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봄.

나. 찬성토론

○ 기금마련은 시 출연금으로 세워 운영하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금씩 세워 증식토록 운영함이 바람직함.

5. 수정안 내용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9.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83
의 결 년 월 일	94. 6. 27 (제29회)

제안년월일 : 1994. 6. 14

제 안 자 : 이종길의원외11인

□ 제정이유

ㅇ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ㅇ 노인복지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ㅇ 기금설치의 필요성

-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촉진

ㅇ 노인복지기금 조성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입금

- 기타 잡비

ㅇ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ㅇ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ㅇ 복지기금 지급 대상 사업

-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지도

-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 법적조치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12조

□ 제정조례안 : 별　　 임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부천시 노인복지기금)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윤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2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구지회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 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사회국장
2. 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부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4년 6월 18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4년 6월 20일

라. 상정일자 : 94년 6월 26일(제4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